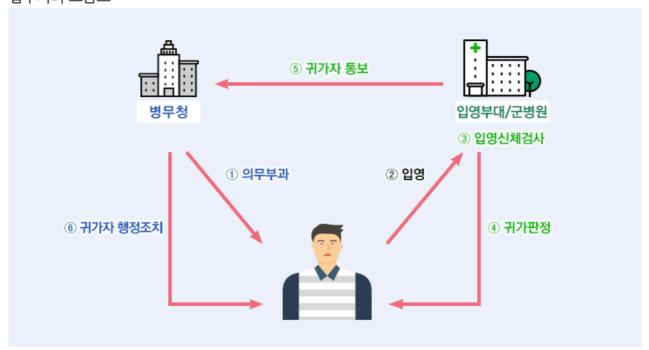
24. 12. 16. 오후 2:17 인쇄

귀가자 처리안내

입영신청 절차 및 복무기간	입영신청 공지사항		입영일자 연기		입영안내 길잡이	
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		상근 예비역제도 안내		귀가자 처리안내		

★ 입영판정검사 실시 부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. (귀가되지 않음)
※ 입영판정검사란? 입영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
업무처리 흐름도



①,②: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 교부, 부대 입영

③: 입영신체검사

(목 적) 현역복무 적합여부 판단

(대 상) 입영자 전원

(시 기)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(입영일 제외, 토·공휴일 포함)

(장소) 〈1차〉 입영부대 의료시설, 〈2차〉 군병원

입영당일	1일차	2일차	3~7일차	
일반검사 X-Ray 촬영	혈액/혈압측정 인성검사	정밀신체검사	귀가조치	
(입영	부대)	(군병원)	(입영부대)	

* 일차별 절차는 입영부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④,⑤: 귀가판정 및 통보

(주 체) 입영부대의 장

(귀가대상) 군병원 정밀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

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,

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24. 12. 16. 오후 2:17 인쇄

(통 보) 귀가시킨 날부터 2일 이내, 병무청에 문서 통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(부령)와 치유기간 명시

⑥ : 귀가자 행정조치

입영부대		병무청		귀가자
귀가 통보	>>	재신체검사 등 개별 안내	>>	병무청 안내에 따라 재신체검사 또는 재입영 (필요 시 병원진료)

귀가 후 14일 이내, 병무청 귀가담당이 귀가자에게 개별 안내를 드립니다.

병무청 개별 안내 전이라도, 필요 시 미리 병원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(재신체검사 시 질병에 따라 병무용진단서 등 서류지참 필요할 수 있음)

귀가증에 명시된 치유기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집니다.

치유기간별 조치		재 입 영			
		일반병(상근포함)	모집병		
없음(0개월)	지체없이 재신체검사	정상판정 후		정상판정 후 10일 이내 신청	
3개월 이상	치유기간 지난 후 재신체검사	3개월 내외	재입영 신청		
1~2개월	치유기간 지난 후 재입영	치유기간 지난 후 3개월 내외	필요	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 까지 신청	

관련규정

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8(입영신체검사의 실시)

(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조치)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

(귀가대상) 복무에 부적합하거나,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

(귀가통보) 귀가일부터 2일 이내

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9(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)

(치유기간별 조치) 미명시·3개월 이상은 재신체검사, 3개월 미만은 재입영 대상

(동일질병 반복귀가 금지) 귀가 재신체검사 후 6개월 이내 입영한 사람

병역법시행령 제27조(현역병의 복무기간 등)

(복무기간 인정) 귀가 전 입영신체검사 받기 위해 부대 재영한 기간